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를 상위법령과 통일되도록 개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의 도정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청년광장”을 “청년도정참여단”으로 개정(안 제2조)
- 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함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개정(안 제9조)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심의기능을 추가함

-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다. 청년희망센터 기능 강화(안 제17조)

-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년정책 안내, 협력체계 구축, 청년발전 또는 지원 관련 조사 업무를 신설함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 추가되었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시행 2023. 9. 22.)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청년희망센터의 업무수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체계를 통일하여 조문 제목 및 일부 인용 법령 오류를 바로잡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제5호의 “청년광장”을 “청년도정참여단”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충북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용어가 사용되는 안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함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조문 제목을 법 제8조와 제9조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법 체계를 통일하였고,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 입법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시행령 제10조의 전문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2항은 시행령 제10조의 전문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항목을 신설함

- 제3항은 청년인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도지사, 청년인 위촉직 위원)으로 격상한 것으로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제정 시부터 또는 개정을 통해 공동위원장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 | 위원장 | 비고 |
|----|------------------------------|-----------------------------------|
| 서울 | 2명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2015. 1. 2.,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부산 | 2명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2017. 5. 31.,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대구 | 1명 (시장) | |
| 인천 | 1명 (시장) | |
| 광주 | 2명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2019. 7. 12.,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대전 | 2명 (시장 및 위원 중 호선) | 2016. 10. 20.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울산 | 1명 (시장) | |
| 세종 | 1명 (위원 중 호선) | |
| 경기 | 1명 (위원 중 호선) | |
| 강원 | 1명 (위원 중 호선) | |
| 충남 | 2명 (시장 및 위촉직 중 호선) | 2020. 12. 30., 전부개정 시 공동위원장 반영 |
| 충북 | 1명 (도지사) | |
| 전북 | 2명 (행정부지사 및 위촉직 중 호선) | 2017. 4. 14.,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전남 | 2명 (도지사 및 청년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2023. 4. 27., 일부개정 시 공동위원장 반영 |
| 경북 | 2명 (도지사 및 위촉직 청년 위원 중 호선) | 2017. 12. 28., 제정 시부터 공동위원장 |
| 경남 | 2명 (도지사 및 청년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2019.9.26. 일부개정 시 공동위원장 반영 |
| 제주 | 1명 (도지사) | |

- 제5항은 충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민의가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함

- **안 제17조**는 청년희망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희망센터 구성·운영에서 희망센터 설치·운영으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또한, 법 제24조의4 신설에 따른 센터 기능에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등 3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됨
- **그 밖에** 안 제18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 인용된 조례 중에서 잘못 사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4년 11월 1일부터로 명시하여,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준비 여건 보장과 2024년 10월 31일에 종료되는 현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함
- 담당 부서인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와 청년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함

라.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 중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추가,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 강화 및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공동위원장 운영, 도민의 대의기관이 추천한 위원 구성 등 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청년도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
- 상위 법령 위배,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의 협의, 조례안 예고 실시 등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